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3년 9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5일, 금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9월 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1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가.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주체에 북한이탈주민을 명시하여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반도 통일 상황에 대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북한이탈주민 명시 (안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명시하여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직접 교류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하여, 지역주민 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외부 요인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자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이 과연 적절 한지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
-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고려, 인도적인 지원 필요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비추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경우도 있음
- 결국,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존속여부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